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8. .

정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3월 17일, 이성권·박선원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6년 3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2026.4.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5.7.)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1차 정보위원회(2026.5.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
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성권·박선원 의원)

보호무역, AI 패권주의 등의 확산으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경제 중심

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식량·에너지·광물 등 핵심 품목·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와 민·군 파급력이 큰 첨단·전략기술 육성 및 산업 우위 확보 등과 같은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음.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경제와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안보정세 변화에 따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 타 부처 소관 법령을 근거로 경제안보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타 부처 소관 법령에 따른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경제안보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기능이 수반·전제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에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명시되지 않아 글로벌 복합위기 속 적극적인 경제안보 활동 수행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어 현행법상 직무 근거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2025년 한해에만 SK텔레콤, KT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이 사이버안보를 위협하고 있음.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은 개별 행정부처 또는 기업 등의 일반적인 예방 활동만으로는 완전 차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규모 조직을 동원하는 활동 특성상 사고 발생시 파급효과 또한 매우 크다는 특징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민간 영역에서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에도 그 해킹수법이나 피해 양상 등에 비추어 공격 배후가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이라도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이

그 배후를 규명하기 위한 사이버안보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와 신속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소행임을 밝혀내고 일반적인 사이버 위협이 아닌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 특성에 맞춘 후속조치를 강구하며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해야 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나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및 조사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관부처 간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및 조사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더불어 ‘경제안보’를 명시하여 정보기관의 적극적 경제안보 직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

되는 경우도 사이버안보 정보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정보 직무의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마목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1) 국가정보원의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직무에 경제안보를 명시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직무에 경제안보(경제안보품목·경제안보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국가첨단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육성, 전략물자 수출입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나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관련된 직무로 ①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②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③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암호부정 사용,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④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⑤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직무를 나열하고 있고,

경제안보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의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에 관한 정보”를 근거로 실시하거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이라 함),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함), 「대외무역법」과 그 시행령 등 개별법령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등 국제 정세불안과 미-중 무역 갈등, AI 패권주의 등의 확산으로 국제 무역질서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은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미래 전략, 경제안보, 식량안보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 수집·작성·배포 활동을 수행하고자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이러한 경제안보 정보활동 과정에서 국내외가 연결된 경제안보 분야 정보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해외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의 공급망 현황, 전략물자의 수급동향, 대(對) 정부 요망사항 등에 대한 국내정보의 수집·작성·배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 경제안보 관련 법령들의 근거규정은 주로 위원회의 정부위원으로 선임되어 심의·조정·협의를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고, 더 역할범위가 넓은 「공급망 안정화법」에서도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정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

행하는 데에 그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의 임무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경제안보 정보직무 수행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직무에 경제안보를 명시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이 경제안보 정보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경제안보가 이미 안보의 핵심적인 영역에 포함되었고, 이란 전쟁, AI 패권주의 등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경제안보에 포함될 분야들을 예시하고 있으나, 금융안보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나 ‘가상자산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과 같이 추가로 포함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구체적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 등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국가정보원장이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금융안보와 관련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

서를 확립하며 급격한 자본 유출입 등으로부터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과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가상 자산의 거래 질서 확립과 안보위협적 자금흐름 차단 등을 위한 ‘가상자산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 등을 괄호 안에 추가할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 “육성·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중 “보호 육성”을 “육성·보호”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앞에서 소개한 미래 전략, 경제 안보 등에 대한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활동 부활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020년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이전에 국가정보원이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顛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배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법 개정을 통해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국외,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등에 관한 정보로 국한하며, 같은 법 제11조(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두어 과거와 같은 성격의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금지한 바 있음.

이후, 국내외가 연결된 경제안보분야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의 필요성에 따라 2023년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국외정보의 개념을 기존의 외국의 정치·경제 등 각 부문에 관한 정보에 더해 이러한 정보가 국가안보·국익·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

보로 확장한 바 있으나,

국외정보에 해당하는 경제안보 정보의 범위가 여전히 불명확하고 제한적이라는 관점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따라서, 정보기관의 적극적 경제안보 직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은 과거와 같은 성격의 국내정보 수집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의 각종 업무규정의 근거가 되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3조(국정원의 운영 원칙) 및 제11조(정치 관여 금지)가 준수될 수 있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개정안 중 “경제안보품목”, “경제안보서비스”, “공급망”, “국가자원안보”, “전략물자” 등 용어의 뜻이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석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바, 해당 용어가 사용된 법률을 인용하는 등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음.

(2)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정보 활동 대상에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명시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직무 중 사이버안보 영역과 관련하여,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마목·바목).

현행법은 사이버안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사이버안보정보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사이버안보정보 업무) ②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적인 사이버위기에 대한 대응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적 사이버위기상황이 아닌 경우 민간부문 각 분야의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는 소관 부처의 유관 법률에 따라 소관 부처 또는 산하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2025년 10월 22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국가정보원의 조사·분석 도구를 민간과 공동 활용하도록 하고, 부처별로 파편화된 해킹 사고조사 과정을 체계화하여 One-Stop 신고체계 도입과 조사단별 투입 시기 최적화 및 상호 정보공유를 강화하며, 민·관·군 합동 조직인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

방·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원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2025년 기간통신사업자인 SKT와 KT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가 발생(2025. 4. SKT유심정보 유출사건, 2025. 8. KT 인증정보 탈취로 인한 무단소액결제)한 이후 국가정보원은 이를 국가배후 해킹으로 의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고조사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정보수집 및 이에 필요한 조사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 밖으로 해석하여 사고조사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 있음.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상 국제·국가배후 해킹 조직에 대한 정보수집과 이들의 활동에 대한 ‘확인·견제·차단’ 및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조사권한을 직무로 명시하고 있어 국제·국가배후 해킹 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에 이들 활동이 당연히 포함되고, 공격 배후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해킹수법, 피해 양상에 비추어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정보수집 및 필요한 조사가 가능하여 국가안보 차원에서 사고 발생 전후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이에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정보 활동 대상에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유관부처 간 직무범위에 대한 해석의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과

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조 필요성, 공공과 민간의 분리에 대한 부적절성,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 대응의 필요성이 수 차례 제기되었고,

제18대 국회에서부터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등 법안을 통해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국가정보원의 역할 강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개정안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직무 범위를 명확화하고 국가 사이버안보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재 개정안은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심되는 경우의 요건이 되는 어떤 해킹수법이나 어느 정도의 피해의 양상인가 등에 비추어 의심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의심되는 경우만으로는 정보조사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었음을 감안하여, 많은 입법례와 같이 ‘의심되는 경우’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개정(법률 제21500호, 2026. 3. 31., 일부개정)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외에도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에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등(같은 법 제48조의4제6항) 침해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추세임을 심사에 참고할 수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성권)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조정하고, 대통령령 제·개정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여 수정의결함.

6. 수정안의 요지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및 체계를 고려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대통령령 제·개정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쳤고, 약간의 자구정리가 있었음.

[붙임] 1.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5. .

제 안 자 : 정보위원장

수정이유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정보에 관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입법 정비를 위한 기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음.

수정주요내용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보호 육성”을 “육성·보호”로 수정함.

나. 개정 법률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제1호나목 중 “보호 육성”을 “육성·보호”로 한다.

안 부칙 중 “공포한”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u>첨 단 전 략 산 업</u> <u>· 국 가 첨 단 전</u> <u>략 기 술 경 쟁 력</u> <u>강 화 및 보 호</u> <u>육 성, 전 략 물 자</u> <u>수 출 입 등 국</u> <u>가 안 보 에 영 향</u> <u>을 미 치 는 경</u> <u>제 에 관 한 사</u> <u>항 을 포 함 한</u> <u>다),</u> ----- -----	----- ----- ----- ----- <u>육 성 · 보</u> <u>호</u> ----- ----- ----- ----- ----- ----- -----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다.·라. (개정안과 같음)
<u>마. 국제 및 국가</u> <u>배 후 해 킹 조 직</u> <u>등 사 이 버 안 보</u> <u>및 위 성 자 산</u> <u>등 안 보 관 련</u> <u>우 주 정 보</u>	<u>마. 국제 · 국가 배</u> <u>후 해 킹 조 직</u> <u>및 그 활 동 (해</u> <u>킹 수 법 이 나 피</u> <u>해 의 양 상 등</u> <u>에 비 추 어 국</u> <u>제 · 국 가 배 후</u> <u>해 킹 조 직 의 활</u> <u>동 으 로 의 심 되</u> <u>는 경 우 를 포</u> <u>함 한 다) 등 사</u>	<u>마.·바. (개정안과</u> <u>같음)</u>

<u><신 설></u> 2. ~ 6. (생 략) ② ~ ④ (생 략)	<u>이버안보 정보</u> <u>바. 위성자산 등</u> <u>안보 관련 우</u> <u>주 정보</u>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u>이 법은 공포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2. ~ 6. (개정안과 같음)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부칙 -----<u>공포 후 3</u> <u>개월이 경과한</u>---- -----.
---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경제안보(경제안보품목·경제안보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국가첨단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및 육성·보호, 전략물자 수출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그 활동(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사이버안보 정보

바.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제5조제2항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직무) ① -----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 · 작성 · 배포	1.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나. ----- ----- -----포함한다), 경제안보(경제안보품목 · 경제안보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 · 국가첨단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및 육성 · 보호, 전략물자 수출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다. · 라. (생 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u>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u>	마. <u>국제 · 국가배후 해킹조직</u>

<u>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 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u> <u><신 설></u> 2. ~ 6.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생 략) ② 직원은 제4조제1항제1호나 목부터 <u>마목</u>까지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 문서열람 · 시료채취 · 자료제 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 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u>및 그 활동(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 · 국가배후 해킹조직 의 활동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를 포함한다) 등 사이버안 보 정보</u> <u>바.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u>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바목</u>----- -----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	---